

일반기업회계기준

고 영 일
인사회계법인 이사

내년부터 주권상장법인, 금융지주회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바가 있으므로 이번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해 현행 기업회계기준과의 중요한 차이 위주로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31개의 장(제26장 주당이익은 미제정 상태임)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석 등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Ⅲ(금융업)

이 장의 목적은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장에서 금융업이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급을 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회사란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금융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예에는 상호저축은행업과 여신전문금융업이 있다.

○ 제4장 연결재무제표

특수목적기업을 한정된 특수 목적(예: 리스, 연구개발 활동 또는 금융자산의 증권화)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회계연도 중에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경우에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될 당해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 이후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며, 이는 각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지배기업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회계추정의 방법까지 일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그 변경효과를 당기와 당

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정책 변경은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10장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예: 단기매매증권, 파생상품(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제외))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 (1) 금융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결제된 경우
- (2) 금융자산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 모두를 상대방에게 양도한 경우
- (3) 금융자산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자산의 통제를 이전하고, 그 상대방은 제3자에게 그 자산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약을 부과할 필요 없이 그러한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분리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 제7장 재고자산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 제8장 지분법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모두 합산하여 주식 보유비율을 판정하지 않는다.

○ 제10장 유형자산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손상차손과 보상금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으로 표시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제10장 ‘유형자산’을 적용한다.

○ 제12장 사업결합

각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지분통합법을 폐지한다. 영업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러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만일 영업매수차익이 재검토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발생시킨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를 포함한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는 달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

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장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총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총당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이나 매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할인율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한다.

○ 제15장 자본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잉여금 없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분(처리)하여 상각한다.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사채가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비가득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비가득조건이 충족되는지에 관계없이 시장조건

이 아닌 모든 가득조건(예: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킬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득기간에 기업이나 거래상대방이 비가득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이를 지분상품의 취소로 회계처리한다.

○ 제20장 자산손상

현금창출단위(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1)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 (2)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된다.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 제21장 종업원급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보고기간말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에 기초하여 할인한다.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충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해당 국가의 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간주 가능)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제27장 특수활동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는 현행 실무와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추출활동에 대한 재무보고는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 제28장 중단사업

사업중단에 대한 ‘최초공시사건’ 이라 함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1)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
- (2) 기업의 이사회나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관의 특정 사업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

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시기가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특정 사업을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 (1) 사업중단계획을 발표한 날에 제3자(구매자를 제외한 타인)가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

간을 연장하는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사건과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체결되어야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나)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완료기간을 연장하는 예기치 못한 조건을 구매자나 제3자가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 그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여 왔다.

(나) 지연요인의 긍정적인 해결이 기대된다.

- (3) 과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상황이 최초 1년 동안 발생하고, 그 결과 과거에 중단사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이 그 기간 종료시점까지 처분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가) 최초 1년 동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 변화된 상황에서 사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극적으로 처분하고자 한다.

○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일반기업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을 요구하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인식을 허용하지 않는 항목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한 종류로 인식되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재분류한다.
- (4) 인식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 동일한 시점에 적용한 과거 재무보고에서의 회계정책과 다를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전환일에 그 조정금액을 직접 이익잉여금으로(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로) 인식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채택시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제거, 위험회피회계, 회계 추정치, 중단 사

업에 대하여 과거 재무보고에서의 회계처리를 소급하여 변경하지 아니한다.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사업결합, 주식기준보상거래, 간주원가로서의 공정 가치, 간주원가로서의 재평가액, 누적환산차이, 복합금융상품, 이연법인세, 추출활동, 리스를 포함한 약정,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복구충당부채 등에 대하여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차이에 따른 조정사항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전환일에 개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상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러한 조정이 실무적으로 재작성이 가능한 가장 이른 기간에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초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간의 자료와 비교가 능하지 않은 과거 표시자료가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최초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간 전의 어떤 기간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의 일부를 실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누락은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채택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 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으로 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용 국제회계기준과 정합시켜 나가려는 제정 방향을 채택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하거나 준용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인 비상장중소기업의 열악한 회계처리 인프라와 해당 특정 국제회계기준의 성격 및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하기 어렵거나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항들에 대해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단순하게 완화 조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 기업들이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전환 이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부담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는 이원화된 회계기준이 병존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기업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재무제표 이용자, 감독당국, 외부회계감사인 등이 재무보고 정보를 이해하고, 감독, 감사함에 있어 종전 보다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